

구미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발의연월일	2024. . .
발 의 자	신용하 의원 외 17인

구미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신용하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2024. . .

발 의 자: 신용하·김근한·김낙관·김재우
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원섭
박교상·박세채·소진혁·양진오
이명희·이상호·이지연·장미경
정지원·추은희 의원(18인)

1. 제안이유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나. 입영지원금 지급(안 제3조)
- 다. 입영지원금 신청 및 지급절차(안 제4조)
- 라. 입영지원금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조례안: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병역법」 제2조, 제5조

2) 「전자정부법」 제36조

3) 「지방자치법」 제13조

나. 부서검토: 안전재난과 의견제출(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붙임)

구미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현역, 보충역, 대체역으로 입영하는 대상자에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 시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며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영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2. “지급대상자”란 신청일 현재 구미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병역법」 제5조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 보충역, 대체역으로 한다.

제3조(입영지원금 지급)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급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입영지원금은 「구미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구미사랑상품권으로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③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조(신청 및 지급절차) ① 입영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입영통지서 수령 후 별지 서식의 입영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그 신청 기한은 입영 후 6개월까지로 한정한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고 60일 이내에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였을 때는 신청자에게 문자, 전화,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신청 및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님에도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입영지원금 지급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입영통지서를 수령한 지급대상자부터 적용한다.

관계법령

□ 「병역법」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징집”이란 국가가 병역의무자에게 현역(現役)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2. “소집”이란 국가가 병역의무자 또는 지원에 의한 병역복무자(제3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복무한 여성을 말한다) 중 예비역(豫備役), 보충역(補充役), 전시근로역 또는 대체역에 대하여 현역 복무 외의 군복무(軍服務)의무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3.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徵集)·소집(召集) 또는 지원(志願)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4.~19. (생략)

제5조(병역의 종류) ① 병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현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
 - 나. 이 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으로 임용 또는 선발된 장교(將校)·준사관(準士官)·부사관(副士官) 및 군간부후보생
2. (생략)
3. 보충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兵力需給) 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복무하고 있거나 그 복무를 마친 사람

- 1) 사회복무요원
- 3) 예술·체육요원
- 4) 공중보건기사
- 5)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 7) 공익법무관
- 8) 공중방역수의사
- 9) 전문연구요원
- 10) 산업기능요원

다.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4. ~ 5. (생략)

6. 대체역: 병역의무자 중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

②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예비역의 장교·준사관·부사관 또는 병으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은 보충역의 장교·준사관·부사관 또는

병으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은 전시근로역의 부사관 또는 병으로 구분한다.

③ 병역의무자는 각각 그 병역의 병적에 편입되며, 병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검 토 의 견 서

부서명 : 안전재난과

조 례 명	구미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p>□ 검토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거 법령<ul style="list-style-type: none">▪ 「병역법」 제5조 (병역의 종류)▪ 「전자정부법」 제36조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지방자치법」 제13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p>□ 주요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구미사랑상품권으로 약10만원(안) 지급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하고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 <p>□ 검토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국적자가 당연히 이행해야 하는 사항, 그 밖에 교육, 의료, 주거 등의 분야에 대한 지원보다 우선인지 추가 검토◦ 사병 급여가 상승됨에 따라 추가적인 금전 지원이 꼭 필요한지 장기적인 검토 선행 必 ※ 향후 예산재정과와 충분한 논의 후 시행 <p>□ 조례 제(개)정에 따른 향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대효과: 입영예정자의 병역의무 이행 자긍심 고취◦ 소요예산: 약3억원<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용추계서 첨부◦ 문 제 점 : 상기 검토결과 내용에 포함	

구미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구미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제3조(입영지원금 지급)

2. 비용추계의 전제: 1인당 10만원, 입영통지서를 받은 자

* 2023년 1/4분기 구미시 19세~22세 남자 인구(출처: 통계청)

22세: 3,026명, 21세: 2,506명, 20세: 2,319명, 19세: 2,430명

3. 비용추계의 결과(단위: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출	국비						
	도비						
	시비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소계(b)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 총 비용(a-b)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0

4. 재원조달 방안(단위: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민간							
기타							
합계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5. 부대의견

6. 작성자: 안전재난과 민방위팀 우종표(☎054-480-6749)